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5026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5.03.0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3.06.

[줄리팝영어]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줄리팝영어"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줄리팝영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33, 161동 407호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 : 1544-3923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줄리팝영어]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¹⁾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줄리팝영어	줄리팝영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33, 161동 407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5.01.01	강주희	1544-3923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07-39-4879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용은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	-	-	-

1) 당사는 동종업종인 "줄리스영어학원" 을 2018년 0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은 영업표지 [줄리팝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줄리팝영어	-
상 호	줄리팝영어 []점	일반적으로 가맹점 지역명을 기재합니다.
상표(서비스표)		간판 및 영업표지 등에 활용 출원 40-2024-0217210
광 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108,847	61,950	46,897	663,104	94,026	96,536
2023	103,070	51,992	51,078	712,536	83,798	84,112
2024	-	-	-	834,608	-	-

가맹본부 사업자는 2025년에 설립되어 본 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기한 재무 현황은 당사가 운영하는 동종업종인 “줄리스영어학원”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 재무현황은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매출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강주희	대표	2025.01 ~ 현재	줄리팝영어 대표	사업총괄
			2018.03 ~ 현재	줄리스영어학원 대표	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		직원수
	상근	비상근	
2024 년 12 월 31 일	1	-	5

상기한 임원 및 직원수는 당사가 운영중인 "줄리스영어학원"의 임직원수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줄리팝영어]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이외에 최근 3년 동안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줄리팝 영어 A B	상표권	출원 2024.11.26	출원 40-2024-0217210	강주희	-



출원 중인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줄리팝영어] 가맹사업 현황

1. [줄리팝영어]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없습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사항 없음)²⁾

2. [줄리팝영어] 가맹사업 연혁

당사의 [줄리팝영어] 가맹사업 시작일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의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줄리팝영어	줄리팝영어	강주희	가맹사업 개시 예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33, 161동 407호

3. [줄리팝영어] 업종

영업표지	업종	
줄리팝영어	대분류	소분류 (주요상품)
	교육(외국어)	파닉스, 리딩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줄리팝영어]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2) 당사는 동종업종(교육)인 "줄리스영어학원"을 2018년 0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줄리팝영어] 가맹점 수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개)

연 도	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줄리팝영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줄리팝영어]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0	-	-	-	-	-	-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	-	-	-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8. [줄리팝영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해당사항 없음					
광고	해당사항 없음					
판촉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예치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안양비산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93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국민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거나,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내용은 귀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당사의 가맹점 형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하에서 표기되는 내용 중 '공부방', '교습소', '학원'으로 별도 분리하여 표기되는 외에 '학원'으로만 표기된 경우에 해당 내용은 '공부방' 및 '교습소'에 모두 적용됩니다.

귀하가 [줄리팝영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학원의 임대비용, 냉난방기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학원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 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7,700				
가맹비	5,500	계약체결 후 즉시	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	가맹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즉시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시	교육개시 이후 반환안됨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계약이행 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7,700	
가맹비	5,500	
개점 전 최초교육비	2,200	
계약이행 보증금	-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7평기준(1평=3.3㎡)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1,920				
인테리어	가맹점사업자 자율	44,550	1,650	가맹점사업자 자율 계약		
설비/집기		2,200	81			
가구 (수업용 의자/탁자)		2,970	110			
간판 및 싸인물		2,200				
별도금액		CCTV, 인터넷, 소방공사, 냉난방기, 외부공사, 음향설비, 화장실 공사, 철거공사 등				



위 표의 금액은 27평 (1평=3.3m²) 기준으로 학원 및 교습소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면적 크기 및 개별 점포의 여건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부방의 경우 별도의 인테리어와 설비집기, 간판은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자/탁자)의 경우 40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가맹학원(학원, 교습소, 공부방)의 면적 및 인테리어, 가구(의탁자류), 비품류(칠판 등)는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간판은 가맹점사업자가 학원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가맹본부는 개점시 현판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최종 의사결정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을 운영할 입지를 선정하지 않으며, 학원 오픈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한 입지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 당사의 교육과정 이수 할 것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 학원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영어 스피킹 가능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강사	* 당사의 교육과정 이수 할 것	* 학원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강사 중 1인은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의 영어스피킹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줄리팝영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330/월	매월 1일	소멸성	-	자동이체(CMS) 필수
강사교육비	가맹본부	550	교육 전	소멸성	-	신규 강사 채용시 (4회 교육)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아래 설명 참조	비용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광고 미실시	광고 시행	-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판촉 미실시	판촉 시행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아래 설명 참조	교육개시 7일전	교육미 실시	교육 실시 후	교육필요시 진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VI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변경 후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교체/보수 후	관련 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	-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광고부담금의 경우 브랜드 및 상품광고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용의 50%를 전체 가맹점이 균분하여 부담하며, 가맹점 모집광고만 진행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광고비용의 100%를 부담합니다. 판촉부담금의 경우 해당 판촉등의 기획비용은 본사가 100% 부담하며, 할인/증정/판촉물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100% 부담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는 정기 및 비정기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외부강사 초빙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강사가 채용되는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내용에는 CCTV, 인터넷 등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학원을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학원운영 및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 하여야 하며,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가맹사업자 학원에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의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학원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학원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양수한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의 일부 반환 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하며,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일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줄리팝영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가맹사업 운영에 따른 채무액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나머지 채무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최초가맹금 중 가맹비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육비와 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양수 승인에 따른 제반행정비용(양수도 관리비)으로 **일금 삼백삼십만원 (₩ 3,300,000)<부가세포함>**을 부담하여야 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개점전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전액과 교육비 및 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학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는 동시에 가맹본부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 등의 관공서에 등록된 영업표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소재지에 가맹본부의 가맹학원임을 표시하는 간판, 인테리어 부착물 등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내·외부 홍보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3) 위 제1호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 4)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5)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줄리팝영어]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교재 및 교구를 비롯한 상품·용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줄리팝영어]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



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연간 거래총액)	비고
-	-	-	-	2024년 기준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줄리팝영어]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2024년 기준
계			-	-	

2) 당사가 [줄리팝영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2024년 기준
계				-	-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 및 교육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교육프로그램

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V.3.3) 상품/용역명 참조	당사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교육프로그램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중지 및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갱신거절 및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에 표시하는 교육과정 외에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교육서비스 등을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상품이나 교육과정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교육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교육서비스 등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1 회 위반시 : 서면 통보 후 시정 요구
다른 가맹점 사업자			- 2 회 위반시 : 1 주일 전 서면 통보 후 물품 공급 중단과 시정 요구 - 3 회 이상 위반시 :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습비(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시간 및 교육서비스의 가격은 가맹점의 해당 관할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교습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파닉스반(주3회)	해당 관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정함	변경시 서면 및 별도 통지	2025년 01월 기준
리딩반(주3회)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 교육 서비스 업종	줄리팝영어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상권(학원가 등)은 영업지역 설정 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합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 학 원 : 2,000세대 또는 초등학교 1개에 해당하는 통학군 * 교습소 : 1,000세대 * 공부방 : 500세대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상기 영업지역은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얻는 방법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당사는 영업지역의 침해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민사적인 해결을 희망하거나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하였을 경우 당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침해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재계약(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기간

[줄리팝영어]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다만,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	

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2 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 32 조 1 항	제 41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자격요건 및 자격유지의 의무'에 규정된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비의 지급에 필요한 증서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 회이상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영업의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복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가맹계약상 전용면적 내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개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 41 조 1 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특히 일신상의 사유인 경우는 1개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② 귀하는 당사가 약정한 교구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요구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4항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③ 그 밖에 계약기간 중에도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관련 법 제개정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계약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영업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로 상권의 급격한 변동(인구, 소비자 기호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3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계약기간 중 계약 수정에 동의 또는 합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의 기간 동안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식으로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혹은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V. 6.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에 따릅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는 후 본사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가맹금 및 교육비 등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관리비 등 부담비용 참조)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개점전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 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대리 및 업무위탁 범위에 따라 교육여부 결정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위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절차 완료	
------	---------------	----------------------------------	---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국내 전지역에서 당사의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줄리팝영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타사 가맹점, 독립학원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해지를 포함) 후 1년 이내에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줄리팝영어]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영어 교육 서비스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당사는 당사의 가맹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교육프로그램의 공급 및 사용 중단,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줄리팝영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이를 3일 전부터 고객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4:00 ~ 19:00	주 5일 이상	문의 : 당사

상기한 영업시간은 권장 표준영업시간으로 지역 특성 및 영업형태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점사업자 포함 1 명 이상	공부방과 교습소는 직접근무 원칙	당사 교육 이수자, 당사와 협의한 자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상기 권장 종업원 수는 해당 교육청 기준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학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의미하며, 학원의 형태 및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필요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교육프로그램 및 상품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학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판촉활동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 및 판촉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 및 판촉활동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광고 및 판촉활동에 관하여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 및 판촉활동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 및 판촉의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 및 판촉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및 판촉 실시 최소 2주일 이전에 그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통지하고 귀하는 통지수령일 2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브랜드+상품광고	50%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	대중매체광고 (이벤트 등)
	상품+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사항 없음	
판촉행사	할인/증정/팸플렛 등	기획비용 100%	할인/증정/팸플렛 제작비용 100%	행사계획 공고→가맹 점부담액 제시 →가맹 점의 행사 참여 결정 →행사 시행→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등의 절 차를 거친 후 전 체 가맹점 사업자 의 70%이상의 동 의시 전체 적용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별로 균분하여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전단지, 카탈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줄리팝영어]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교육방법, 판매방법,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손해배상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서에 규정한 자점매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1회당 금 일백만원 (₩1,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함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기간 만료전 가맹점이 폐업 또는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여 계약 개월수에 금 일백만원(₩1,000,000)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함. * 위약금 = 잔여개월수 X 일백만원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시 특약으로 초기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및 로열티 등을 면제한 경우에(일부 면제포함),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최초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면제받은 금액 전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함, 단, 면제(일부면제 포함)된 로열티 반환의 경우에는 갹신되는 계약기간 중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됨.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당 금 삼십만원(₩ 3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함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	제47조



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

개점 전 해약에 대한 위약금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지급 받은 금액 중 반환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한다. 단 교육개시 이후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음 1.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는 예치금의 10% 2.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는 예치금의 30% 3.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에 가맹점사업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는 예치금의 50% ○ 상기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협력업체에게 진행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제48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50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사업 설명 ·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0	
면접	-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자율 선정 후 실사)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점 승인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5	
가맹금 예치	- 은행 예치계좌에 최초가맹금 입금	D-35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4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간판	D-33~3 (30일)	
교육 실시	- 오픈 교육 실시 (4회 실시)	D-18~3 (15일)	
리허설	- 가맹점사업자 자체 리허설	D-2~1 (2일)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D-day	

상기 일정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므로, 상기한 인테리어 소요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바에 의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 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 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줄리팝영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종류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고
신규 교육	운영 교육 및 지원	이론/실습	① 가맹계약체결시 교육비 입금(예치) ② 교육은 정보공개서 VI.1 에 기재한 일정에 따라 진행 ③ 가맹계약 체결 후 1 개월 이내 교육 개시	필수 교육
수시(보수)교육	별도 필요시	이론/실습	① 교육 14 일전 통지	
정기 교육	서비스 교육 등	이론/실습	② 교육비는 교육개시 7 일전까지 입금	
신규 강사 교육	커리큘럼 등	이론/실습	강사 신규 채용 시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줄리팝영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4회 실시	2,200 (최초 교육비)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보수)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변동	실비	외부 강사 초빙 및 워크숍, 재료비용 발생 시 추가 실비 발생
정기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변동	실비	
신규 강사 교육	4 회 실시	550	강사 신규 채용 시



상기한 교육 진행시 교육장소는 본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여 양당사자의 협의로 본사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상기한 교육비 외에 실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 종료 시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수료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준 미달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희망하거나 양당사자의 협의로 교육시간을 추가할 경우 추가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당사자 및 강사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기본인원(가맹점사업자 1명) 외 추가되는 인원에는 대해서는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센터(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044-200-4938)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